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4-3083 (2024. 6. 3.)

(유효기간 : 2024. 6. 10. ~ 2026. 6. 6.)

「NH주거래우대통장」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NH주거래우대통장

■ 상품특징 :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계약내용은</u>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4. 4. 24.)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개인(1인1계좌)	
상품유형	저축예금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의 가입	영업점, 비대면에서 가능	
예금의 해지	영업점, 비대면에서 가능	
이자산출근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지급	
이자지급시기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입금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자율 (연%, 세전)	0.10 (예금종류별 기본금리 준용)	
우대이자율 (연%p, 세전)	※ 최고 2.0 (일별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하며, 기본금리 포함 적용기준) ① 우대조건	



조건내용

- 이 예금에 해당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주1)}
- 이 예금에 농협은행 NH채움·NHBC(개인신용/체크) 결제실적 월 20만원 이상
- 이 예금에서 납부자(타행)자동이체 또는 출금이체(자동납부)^{주2)}로 3건 이상 출금 농협은행 적립식예금에 해당 월 10만원 이상 불입실적 있는 고객
- 주1) 급여의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 준용

「급여입금 인정기준 주요내용」

- ※ 급여는 농협 급여이체와 타행 급여이체로 구분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 예시) 9월 30일(일)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월)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 → 9월 급여실정 인정(X) / 10월 급여실적 인정(O)
- 1. 농협 급여이체 : 급여 코드로 입금된 경우(* 농협 :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 2. 타행 급여이체 :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y , pay" 등으로 기록된 경우
- 3. 급여이체일 등록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1영업일을 포함)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주2) 계좌간 자동이체(당행이체)를 제외한 농협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금되는 타사 카드대 금(농협카드 및 농협BC카드 제외),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에 대해 지로, CMS에 의한 자동납부 및 펌뱅킹, 펌뱅킹플러스, 아파트뱅킹 자동이체를 의미하며 실시간 이체는 제외

우대이자율 (연%p, 세전)

우대서비스/우대금리의 기준실적 또는 <u>납입한도</u> 산정 시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대금결제 등을 포함한 <u>자동입출금거래</u>는 <u>신청일에 상관없이 실제거래가</u> 발생한 날의 해당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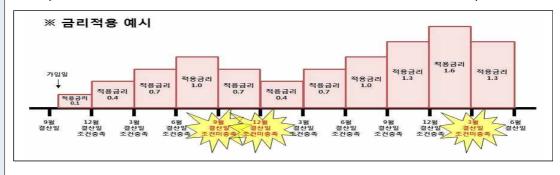
- 신청일이 월말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의 사유로 실제거래가 익월에 발생 하면 익월실적에 포함됩니다.

② 적용기준

▶ 결산일이 속한 달(3월, 6월, 9월, 12월)의 전월부터 과거 3개월 동안 위의 우대조건 중 3개 이상 충족한 월이 2개월 이상인 경우

③ 적용방법

▶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결산일 현재 적용금리에 0.3%p 가산한 금리를,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0.3%p 차감한 금리를 다음 결산기에 적용 (차감 후 금리가 기본금리보다 낮은 경우 기본금리를 적용)





무통장 거래	가능	
예금 해지 시 불이익	해당없음	
거래중지계좌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양도	불가능	
질권설정	불가능	
	① 우대조건 • 전월말 기준 아래 조건 내용 중 2개 이상 충족 시 제공	
	조건내용	
	이 예금에 해당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주1)}	
	이 예금에 농협은행 NH채움·NHBC(개인신용/체크) 결제실적 월 2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납부자(타행)자동이체 또는 출금이체(자동납부) ^{주2)} 로 3건 이상 출금	
	농협은행 적립식예금에 해당 월 10만원 이상 불입실적 있는 고객	
	주1) 급여의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 준용	
우대서비스	「급여입금 인정기준 주요내용」 ※ 급여는 농협 급여이체와 타행 급여이체로 구분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예시) 9월 30일(일)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월)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 → 9월 급여실정 인정(X) / 10월 급여실적 인정(O)	
	1. 농협 급여이체 : 급여 코드로 입금된 경우(* 농협 :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2. 타행 급여이체 :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y , pay" 등으로 기록된 경우 3. 급여이체일 등록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1영업일을 포함)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2) 계좌간 자동이체(당행이체)를 제외한 농협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금되는 타사 카드 대금(농협카드 및 농협BC카드 제외),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에 대해 지로, CMS에 의한 자동납부 및 펌뱅킹, 펌뱅킹플러스, 아파트뱅킹 자동이체를 의미하며 실시간이체는 제외	
	② 우대기간 ►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 예금을 통한 거래 시 아래의 금융수수료 면제 제공(단, 신규일로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우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금융수수료 면제)	



③ 우대내용 : 금융수수료 면제

- ① 농협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텔레뱅킹 상담사를 통한 이체거래 제외)
- ② 농협은행 CD/ATM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지역농·축협 포함)
- ③ 농협은행 CD/ATM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지역농·축협 포함)
- ④ 수신부대업무 관련 수수료
 - ↳ 제증명발급수수료, 거래내역확인서발급수수료, 증서재발급수수료
- ⑤ 납부자(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 ⑥ 다른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월 5회 이내)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제외

④ 기타:『NH신용Manager플러스』서비스 이용금액 할인

- ▶ 농협은행 채움카드의 결제계좌가 이 통장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카드 보유자가『NH신용Manager플러스』가입 시 월900원 할인
- ▶ 매월 서비스 비용 청구 시 이 통장으로 결제계좌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할인여부를 적용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 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이체, 송금 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 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 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 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예금 사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품전환	일반 저축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가능 단, 이 예금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3 유의 사항

- 상품내용 및 서비스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 이 예금은 샐러리맨특급통장, 채움샐러리맨우대통장, 공직자우대통장, 플러스공직자우대통장, 채움공직자우대통장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개인고객부)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 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